

예 산 총 칙

202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826,834,600	384,805,038
일반회계		11,577,156,545	347,314,696
특별회계		1,249,678,055	37,490,342
기타특별회계		1,249,678,055	37,490,342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580,243	17,407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52,602,738	1,578,082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1,119,997	333,6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6,897,676	18,806,93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50,000	25,5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347,206	100,416
소방특별회계		553,588,836	16,607,665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		691,359	20,741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9,490,036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67,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